

# 환경경영 규정

사규번호	규정 2026-4
담당팀	기술연구팀
제정일자	2026.06.12
개정일자	-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태영건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·외 환경 법규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, 기후변화 및 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본사 및 국내외 건설 현장에 적용한다. 다만, 사업의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# 제3조 (환경경영 이행)

회사는 아래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 환경경영을 이행한다.

- ① 사전예방 : 환경오염 및 사고 가능성의 사전 식별 및 저감
- ② 법규준수 : 환경 관련 법령·국제협약의 준수
- ③ 책임경영 : 최고경영자의 책임 아래 환경경영 추진
- ④ 투명성 : 환경 성과 및 리스크의 투명한 공개
- ⑤ 지속개선 : 목표 설정-이행-평가-개선의 선순환 체계 구축

## 제4조 (환경경영 관리 및 운영 조직)

- ① 최고경영자는 환경경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필요한 자원과 조직을 관리한다.
- ②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주요 환경경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.
  1. 환경경영 정책, 전략 및 중장기 목표
  2. 주요 환경 리스크 및 사고 보고
  3. 기후변화, 탄소중립, 자원순환, 대기, 물, 생물다양성 등의 안건
- ③ 환경경영 이행 전담조직은 다음의 전사 환경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.
  1. 환경경영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
  2. 온실가스·환경 데이터 통합 관리
  3. ESG 평가 대응 및 공시 자료 관리
  4. 현장 환경관리 체계 점검 및 지속적 개선

## 제5조 (온실가스 배출량 관리)

- ① 회사는 온실가스 활동자료를 관리하고, 사업장(현장 전체) 및 회사(사업장 포함 본사 건물 등)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산정, 관리한다.
- ② 배출량은 다음 범위별로 산정, 관리한다.
  1. Scope 1 (직접배출)

2. Scope 2 (간접배출)

3. Scope 3 (기타 간접배출) : 필요시

- ③ 회사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.
- ④ 저탄소 장비 사용,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.
- ⑤ 국가 온실가스 정책 및 제도를 성실히 이행한다. (목표관리제, 배출권거래제(ETS) 등)

#### 제6조 (에너지 사용량 관리)

- ① 회사는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, 연료 사용량 등 에너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, 에너지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산정, 파악, 관리한다.
- ② 회사는 에너지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한다.
- ③ 회사는 고효율 장비 사용,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, 신재생에너지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.

#### 제7조 (자원·폐기물 관리)

- ① 회사는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회사는 폐기물 처리 시 재사용·재활용을 우선 적용하며, 폐기물 관련 법정 신고·처리 기준을 준수한다.
- ③ 회사는 원(부)자재의 친환경 구매 산정을 위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친환경 구매를 위해 노력하며 그 실적을 파악, 관리한다.
- ④ 회사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그 실적을 파악, 관리한다.

#### 제8조 (대기, 소음·진동, 수질, 토양 관리)

- ① 회사는 대기, 소음·진동, 수질, 토양 등 건설업의 주요 환경이슈 관련하여 중장기 목표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한다.
- ② 각 현장은 공사 수행 시 대기, 소음·진동, 수질, 토양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.
- ③ 회사는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한다.

#### 제9조 (화학물질 관리)

- ① 회사는 대체공법 적용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한다.
- ② 불가피하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취급·보관·사용·운반·폐기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③ 회사는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및 폐기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업체를 통해 처리하며, 무단 방류·불법 폐기 행위를 금지한다.
- ④ 유해화학물질 누출, 유출 등 환경사고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확산 방지, 관계기관 신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비상대응 절차를 이행한다.

#### 제10조 (현장 환경관리)

- ① 현장소장은 현장 환경관리의 책임자이며 다음의 환경사항을 관리한다.
  - 1. 환경법 준수
  - 2. 환경 데이터 보고
- ② 모든 현장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·운영한다.
- ③ 환경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한다.

### 제11조 (협력회사 환경관리)

- ① 회사는 환경경영 리스크를 진단/평가하기 위한 제도 및 기준을 수립하고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회사는 협력업체의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 교육 등을 지원한다.

### 제12조 (교육)

회사는 본사 또는 현장 임직원,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.

### 제13조 (점검 및 모니터링)

- ① 환경경영 이행 전담조직은 현장의 환경 관리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
- ② 회사는 전사 및 현장 단위 환경성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.
- ③ 중대한 환경법 위반 사항 및 환경사고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.
- ④ 점검, 모니터링 사항은 본사 팀, 현장의 KPI 및 협력업체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환경기술 개발 및 도입)

회사는 친환경 기술 및 환경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또는 도입하도록 노력한다.

### 제15조 (환경정보 공개)

회사는 관련 법령 및 ESG 공시 관련 기준에 따라 다음의 환경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다.

- ①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
- ②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성과
- ③ 주요 환경 리스크 및 대응 현황 (폐기물, 수자원, 대기, 소음진동,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)
- ④ 환경법규 위반 내역,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

### 제16조 (부칙)

- ① 이 규정은 2026년 6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